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 결과 95% '허위'

자동차 허위 등록·싼 가격 제시...고객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

현행 차 관리법, 명의소유권 이전 후 정식등록...판매된 후 삭제

경기도가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실시했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을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

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제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



된 사진을 무단 복사,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 광고한 사이트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

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 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서선옥 기자



장맛비에 떠내려온 부유물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서 수원상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이 장맛비에 떠내려온 부유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경찰,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중고거래 사이트 등 개인간 온라인 거래시 주의 당부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A씨(27세, 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올해 2월경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계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로부터 16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가 광주시 북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2만원을 압수하였으며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간 거래 또한 활성화되고 있어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간 거래시에는 '경찰청 사이버백' 앱이나 사이버 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 등에서 상대방 ID와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이 사기에 이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취재본부

채널A 전 기자 "휴대폰 돌려달라" 검찰 "회사측에 이미 반환했다"

이른바 '김·연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휴대폰과 등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압수물은 회사 측에 반환했으며,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압수

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준항고인·변호인 측의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한 점', '일시·장소를 통지 않은 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고 검찰의 압수수색 2건과 그 압수물(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등 압수수색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1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5월 말에 검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전화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반고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전 기자에 대해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뉴시스

변호인, 27일 검찰에 압수물 환부 요청
법원, 최근 이동재 '준항고'에 일부 인용
검찰, 압수물 분석 후 채널A 측에 전달
"압수 전 포맷...주요 자료로도 안 쓰여"

물 환부 요청을 했다. 다만 해당 압수물들은 앞서 검찰이 분석 후 채널A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원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

적법하게 이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사건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다"며 "이미 반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